

『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태근 의원 외 9명

2. 폐지이유

- 본 조례는 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인 조례로서, 시행기간이 1999.12.31자로 만료되어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, '95.01.01자로 제정하였으며,
- 구미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, 건축물 및 그 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·처분에 적용토록 제정된 조례로서, 그 사업이(진평지구) 종료되었고, '99.12.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시행 토록한 한시조레이므로,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